

## 군 복무 중 학점인정제도 운영 규정

제정 2019. 8. 29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「학칙」 제46조의 2(학점인증제), 학칙시행규칙 제112조(군복무 중 학점인정)에 의거하여 군 복무 중 학점인정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① “군복무 중 학점인정”이라 함은 본교 재적생 중 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군복무 중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.

② “군복무 중 대학 원격 강좌”라 함은 본교 재적생 중 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정보통신망원격수업을 활용하여 본교에서 개설 또는 학점 교류로 개설한 온라인 강좌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.

③ “특기병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”이라 함은 본교 재적생 중 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각 군 병과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점으로 인정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.

**제3조(운영)** 군 복무 중 학점인정제도 운영은 학사팀에서 담당 한다.

**제4조(학점인정 및 시기)** ① “군복무 중 대학 원격 강좌”는 본교의 정규학기에 “군 이러닝 강좌”로 개설된 교과목에 대해서만 수강가능하며 성적처리는 계절학기에 한다.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로 인정한다.

② “특기병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”은 학칙시행규칙 제109조(학점인정)으로 정규학기에 학점을 인정하며 학칙시행규칙 제54조(수강신청 제한)의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.

**제5조(수강신청)** ① 수강신청 자격은 본교 재적생 중 군 휴학자로서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로 한다. 다만, 전역일자가 수강학기 수업일수 16분의 13 이내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.

②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 군 이러닝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수강료)** ① “군복무 중 대학 원격 강좌”수강료는 당해년도 본교 계절학기 학점당 수강료기준에 따른다.

② 수강료 납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군 이러닝에서 담당한다.

③ 수강료 정산은 이러닝 운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.

**제7조(출석 및 시험)** ① 출석은 담당교수가 지정한 학습기간 내에 학습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.

② 결석허용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며, 결석허용횟수는 본교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에 따른다.

③ 시험은 지정된 기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.

**제8조(성적평가)** 성적평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성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.

**제9조(학점인정 및 절차)** ① 특기병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을 위하여 매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서(별지 서식)를 교무처 학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사팀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.

1.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의 교과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며, 그 시기는 취득학기로 한

다.

2.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며,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3. 학점으로 인정된 성적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

**제 10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에 따른다.

**부 칙(2019. 8. 29.)**

①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